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19가단239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유정수

변론 종결 2021. 3. 24.

판결 선고 2021.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분의 1 공유 지분에 관하여 2019. 5.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34,830,5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34,830,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D은 부부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D과 피고는 2019. 5. 28. 이 사건 아파트 중 D의 2분의 1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2019. 5.29.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한편, 이에 앞서 피고의 예금 계좌에서 D의 예금 계좌로 2018. 11. 13. 1억 원, 2019. 5. 27. 1억 원 합계 2억원이 이체되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가) 이 사건 아파트 2분의 1 공유 지분

: 2019년 이 사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548,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74,000,000원 상당의 재산으로 본다.

나) E증권 계좌의 현금 잔고 151,001,251원

다) E증권과 증권담보부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E증권에 담보로 제공한 'F'주식 9,6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평가금액은 699,864,000원이다.

라) 합계 : 1,124,865,251원

2) 소극재산

가) E증권에 대한 증권담보부 대출금 채무 532,263,882원

나) G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8,242,574원

다) H은행(고척동지점) 대출금 채무 40,231,943원

라) H은행(강서지점) 대출금 채무 16,787,619원

마) [카드 신용카드대금 및 신용대출금 채무 44,106,879원

(단, 2019. 12. 26. 기준 금액이다)

바) 원고에 대한 채무 31,298,315원 (단, 2019. 7. 4. 기준 금액이다)

사) 합계 : 782,931,212원1)

다. 한편, D이 E증권과 체결한 증권담보부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거래 도중 담보가액의 총액이 대출금 대비 14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추가 담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E증권이 담보물인 증권을 임의상환(통상 '반대매매'라 한다)하여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9. 6. 27. D이 담보로 제공한 F 주식의 주가가 악재로 급락하여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하였고, 2019. 6. 28.에는 담보부족금액이 480,087,217원에 달하였으며, D이 추가 담보 제공을 하지 아니하자 E증권은 2019. 7. 3. 임의상환을 하여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D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잃었고, E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305,856,988원으로 감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채무자 D,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의 액수는 앞서 본 H은행(고척동지점) 대출금 채무 40,231,943원이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9. 7. 2. 위 대출금 채무 상환이 이루어져 근저당권 해지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D은 2019. 8. 26.부터 원고의 카드대금 및 신용대출금 등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12. 10. 기준 연체한 채무액이 34,830,588원이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615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1.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1의 라. 항과 같이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로서 원고의 피보전권리의 액수인 34,830,58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D은 E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 거래를 하였는데,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2018. 11. 13. 1억 원, 2019. 5. 27. 1억 원 총 2억 원을 차용하였다. D은 위 2억 원 상당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2019. 5. 28.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것도 아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주식 주가의 급락, E증권의 이 사건 주식 임의상환이 이루어져 D이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주식 주가의 급락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D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는 D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물변제로 27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2분의 1 공유 지분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예금 계좌에서 D의 예금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2억 원이 이체되어 D이 각각 같은 날 해당 금액 상당을 E증권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마지막 이체일의 다음 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대물변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액수와 금전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부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통정허위표시라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계약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D의 적극재산은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총 1,124,865,251원이었고,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원과 제1의 나의 2) 항 기재 782,931,212원을 합한 982,931,212원이어서 D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D의 적극재산은 850,865,251원(= 1,124,865,251원 - 274,000,000원)이 되고, 소극재산은 782,931,212원이 되었는데 이로써 D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설령 D의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D이 피고에 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D의 적극재산은 총 1,124,865,251원, 소극재산은 782,931,212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D의 적극재산이 850,865,251원 상당으로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D의 적극재산의 액수가 소극재산의 액수를 초과하므로 D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니다.

3) 또한,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D과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D의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D의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D과 피고가 부부 관계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의 적극재산 중 대부분을 평가가치에 등락이 있는 이 사건 주식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으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혜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구로구 [] [] [] 아파트 [] 동
 (도로명주소) 서울 구로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2층 [] 호 84.92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구로구 [] 대 12519.3평방미터
 2. 서울 구로구 [] 대 13.8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 1.2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2533.1분의 33.606

1) 위 2)의 마), 바)항의 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로서 위 다.항 기재 임의상환으로 D의 자력이 약화된 이후의 기준 금액이므로 엄밀히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D의 소극재산이 총 782,931,212원에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